

119 생활안전대

신고접수·출동 및 현장업무처리 표준절차

2013. 9.

《 출 동 실 태 》

- ❖ 138개 생활안전대 : 115개 안전센터 + 23개 구조대
- ❖ 1일 출동 현황 : **1.2건 / 1개** 생활안전대별(24시간 기준)
 - 1일 2교대(주야간) 기준 1개 대당 0.6건, 1회 55분여 소요
(개인별로는 2당번에 1회 내외 출동)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작 성 자

구조대책팀장 : 백남훈 ☎ 3706-1420 / 담당 : 손병두 ☎ 3706-1421

목 차

1. 법적근거

2. 목적

3. 적용범위

가. 업무범위	5
나. 현장활동관 관련된 각종 규정	7
다. 업무처리 절차	7

4. 생활안전대원의 행동지침

가. 생활안전대원의 마음가짐	8
나. 안전관리 일반원칙	9
다. 시민응대 일반원칙	10

5. 동물보호, 포획처리

가. 벌집제거	11
나. 야생동물 등 포획	12
다. 동물처리 일반적인 사항	13

6.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가. 낙하위험물 등 시설물 위험요인 제거	16
나. 급·배수지원	17
다. 시건개방	18
라. 단순신체 끼임 사고	19
나. 소방시설 오작동	20

목 차

7. 위치정보 요청 업무처리

가. 119 수보단계에서의 업무처리	20
나. 출동대	22
[별지1] 구조활동일지	24
[별지2] 생활안전구조활동 증명서 발급신청서	25
[별지3] 생활안전구조활동 증명서	26
[별지4] 구조거절 확인서	27
[별지5]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자인서	28
[별지6] 서울시동물보호 및 TNR사업 위탁현황	29
[별지7]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 현황	30
[별지8] 인수인계서	31
[별지9] 유해, 야생동물 종류	32
[별지10] 허위, 거짓신고 사실조사 의뢰서	34
[별지11] 소방활동 동의서	35
※ 참고 : 119 생활안전대 필요장비 현황	

1. 법적근거

-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제1항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 수행
- 나.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119구조구급국) 제4항 제10호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위험제거활동 등 소방지원활동'
- 다.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271호)

2. 목 적

- 가. 이 지침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119에 접수된 국민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및 출동, 현장활동 등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규정한 것임

* 생활안전구조 :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안전위험은 있으나, 긴급성이 낮은 경우) - 유해 동물(말벌, 뱀·파충류, 유기견 등) 포획·처리, 위험물질 제거, 소방시설 오작동 처리, 급·배수 지원 등

- 나. 『119 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와의 관계

-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조치요구는 령제 20조 단서조항으로 판단하여 현장에 임하되, 상습 악용·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충분히 조치할 수 있음에도 요구하는 경우에는 령제 20조를 적용함.

령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적용범위

가. 업무범위

1) 생활밀착형 구조 활동

- ① 문 개방, 장신구 제거, 좁은 틈 신체고립 등 움직임이 외부적·내부적 요인으로 제한을 받아 고통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상태 해소, 다만 외부에서 실내진입을 위한 문 개방 등은 거절할 수 있음(업체 안내)
- ② 대형고드름, 폭설,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 상태가 지속되어 방치하였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시민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상태의 해소
- ③ 기타 시설물의 불안전 등으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해소
- ④ 강풍, 폭우, 낙뢰 등 목전에 다가온 재해로부터 방치되어 있을 경우 시설물이나 물건의 낙하 등으로 생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 제거

2) 동물처리

- ① 말벌, 각종 벌종류 등 사람이 쏘이거나 물렸을때 심한통증 또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곤충(이하 “말벌 등” 이라 함)의 제거
 - ※ 바퀴벌레, 개미 등 사람에게 직접적위 위협을 주지않은 곤충 제거 등은 출동 하지 않고 관련 업체에 문의토록 안내, 다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위급한 상황일 경우 구급출동으로 처리
- ② 뱀, 멧돼지 등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거나 물리거나, 공격을 당했을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동물이 사람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 해소
- ③ 기타 동물로서 사람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에 있거나 특정인의 통제 범위에 있어도 불안전하여 조치요구를 하였을 경우 출동하여 경고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요구 등의 행동
- ④ 유기동물(애완동물), 보호동물, 반려동물 등이 주인 없이 길거리를 배회 교통사고 유발 등 제2의 사고요인이 될 수 있는 급박한 상태 등에 놓여있을 때의 포획 보호조치

- ⑤ 기타 대형동물 또는 유해동물 등 의 방치로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 ⑥ 동물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울무, 좁은틈에 끼임 등으로 방치하였을 경우 죽을 수 있는 상태 해소

3) 기타 단순 응급조치

- ① 생활주변에서 준 위험¹⁾ 또는 잠재적 위험 상태를 방치 하였을때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태해소
- ② 식수공급, 비상전원공급, 기타 오랜 가뭄으로 인한 가로수 및 농작물 급수지원 등 비정상적인 자연상태 해소를 위한 대응
- ③ 침수지역 배수, 위험물질의 방치 등이 지속되어 시민들의 안심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 긴급해소, 장시간 해결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 조치
- ④ 기타 긴급히 119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없거나 자체해결을 시도할 경우 자칫 안전사고 발생 우려상황 해소
- ⑤ 위치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정보 이용서비스

※ 119생활안전구조대의 주요 활동영역(훈령 별표 2)

업무 분야	세부추진활동		비 고	
	중분류	소분류		
생활밀착형 구조활동	인명	단순구조	문 개방, 장신구 제거, 좁은 틈 신체고립 등	준 긴급 잠재 긴급
		안전조치	대형고드름 등 낙하우려 위험물 제거 강풍 등에 의한 피해우려 위험시설 안전조치	
	동물	보호조치	유기동물, 천연기념물 및 반려동물 등 보호	
		포획(퇴치)	벌집제거 등 피해 우려 야생동물 포획 및 퇴치	
	단순 응급처치	긴급을 요하지 않는 단순 응급처치 ²⁾		
민생 지원활동	급수·급전	긴급 식수(먹는 샘물) 공급, 비상전원·조명 공급		
	배수	침수지역 배수지원		
	기타	오작동 소방시설 처리		

1) * 준긴급 : 긴급에 비해 시간제약이 적은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긴급 상황으로 전개됨

* 잠재긴급 :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긴급·준긴급으로 전개됨

2) 단순 응급처치 : 비의료인, 일반인 등 누구나 처치 가능한 수준의 응급처치를 의미함

나. 현장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 감염방지, 구조활동의 기록, 증명원발급 등
- 소방장비관리규칙 : 장비점검
- 소방장비조작 및 훈련기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소방방재청 예규 제69호)
- 소방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 : 장비 교육훈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유해동물 포획·퇴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포획용 마취제, 희석제 사용 및 관리
- 동물보호법 : 유기동물 구조·보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로프발사총, 마취총, 석궁 등 보관
-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및 동법 제59조(과태료) : 허위신고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관계법
- 민원업무처리에 관한법률 : 구조활동증명서 발급 등
- 개인정보보호법 : 119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 유실물법 : 구조된 물품의 취득 처리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 지휘통제,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

다. 업무처리 절차

- 1) 생활안전대 현장출동 상황은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구조·구급출동에 준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 2) 모든 현장활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22조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에 의거 관리유지하고 보존한다
- 3) 현장상황기록
 - ① 신고자 :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신고사유
 - ②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관계내용
 - ③ 현장상황 : 현장도착 후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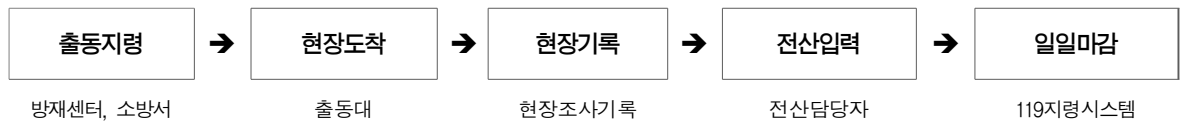
- ④ 활동내용 : 관계자 입회하에 6차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⑤ 조치결과 : 조치결과, 인계사항 등 상세히 기록
- ⑥ 전산입력
 - 입 력 : 복귀 후 교대근무 前 까지 → 구조활동 일일 24:00 마감
 - 시스템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 항 목 : 재난 및 안전사고 주요 13개유형 119개 세부유형별 입력

4) 기록관리 : 소방관서 3년간 보관 → 전산입력 자동 보관

5) 전산입력 기록주의

- ① 허위 :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및 동법 제59조(과태료)
- ② 자체처리
 - 현장도착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의한 경우 : 자체처리 기록
 - 현장도착후 출동대에 의해 인지되는 경우 : 현장기록 조치결과에 상세 기재

6) 업무처리 흐름



7) 업무종료후 새로운 기술력으로 해결하였거나, 시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사례,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특이한 안전사고 사례, 해결과정의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는 스토리식으로 내용을 기술 본부 구조대책팀으로 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수시제출

※ 연 1권씩 책자제작 배부하여 특이사항 기술공유 및 시민 홍보·안전교육 등 실시 (최우수자 5명, 서울시장표창 수여 및 2014년도부터 서별 성과평가반영), 의무적 제출사항은 아니고 직원들의 자발적 작성 제출사항임.

4. 생활안전대원의 행동지침

가. 생활안전대원의 마음가짐

- 1)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외면하지 않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 봉사의 마인드를 가진다.

- 2) 1:29:300의 안전사고 법칙에서 300의 예비 징후들을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소방 본연의 임무라는 의식을 가진다
- 3) 생활형태의 다양성에 기초한 관련법규, 제도들을 인식하고 관련 법, 제도 등을 끊임없이 습득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반규칙을 준수하고 요청한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다양한 형태의 생활안전사고에 유연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각종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고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지혜를 쌓아간다. 또한 현장활동은 팀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대원 상호간 업무분담과 상호 의견교환 및 공유를 한다
- 5) 시민을 상대할 때 깔끔한 외모, 긍정적인 언어사용 등으로 119의 이미지에 해가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하고 각대의 대장들은 대원들의 행동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가진다.
- 6) 119를 찾는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에서 최후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진다.
- 7)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다하되 제도를 악용하거나 허위, 거짓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책임을 물어 선진 시민의로서의 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 8) 생활안전 구조활동 유형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장비사용법 및 장비의 성능 등을 파악한다
- 10) 체력관리에 힘쓰고 대원의 입장에서는 사소하고 귀찮은 일이라도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나. 안전관리 일반원칙

- 1) 현장 출동중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현장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관계자에게 현장상황을 정확히 들으면서 출동을 한다.
- 2) 출동대장은 출동중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현장상황을 토대로 현장 위험인자를 확인, 전대원에게 전파한다

- 3) 현장도착시 상황을 파악,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대원 상호간 토의를 통해 위험 제거를 먼저 시행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작업에 임한다
- 4) 주변에 주민, 차량, 시설물 등이 있을 경우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모두 밖으로 대피시키거나 이동조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 5) 아무리 사소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2인 1조가 원칙이며 반드시 안전관리장비를 모두 갖추고 업무에 임한다
- 6) 필요시 유관기관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안전위해요소를 설명하면서 추가 시설물의 파손우려 등 예측된 피해상황을 모두 설명한후 동의를 구하고 조치에 임한다, 이때 동의는 서면으로 자필 서명을 받음으로서 뒤에 예상되는 배상조치 등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한다.
- 7) 출동중 으로부터 현장안전관리는 재난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되 안전위해요소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재난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일부 축소 적용할 수 있다.
- 8) 현장대응중 사생활침해우려나 사거주지 출입시에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관계자의 동의를 구한 후 출입한다, 이때 작업진행 중에는 관계자가 입회 하도록 요청한다.

다. 시민응대 일반원칙

- 1) 현장에서 시민과 첫대화할 때 거리는 2m 정도 유지하고 정면보다는 약간 사선의 위치로 상체는 숙여서 대화하는 것이 좋다
- 2) 비록 법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할 지라도 법에 의해서 거절하도록 되어있어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관련“법”을 먼저 통보하기 전에 시민의 불만사항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는다.
- 3) 시민요구에 공감을 같이 표하고 불법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성숙한 시민으로서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로 설득을 한다.
- 4) 대화를 할때는 제스처어가 55%를 차지하므로 가급적 말과 행동을 같이하면서 대화하고 시민과의 거리는 15Cm ~ 45Cm 사이의 거리를 유

지하는 것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 5) 시민의 불만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런 불만을 흡수하여 소방조직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삼겠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한다, 즉 내가 왜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느냐는 생각보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자세로 차근차근 설득해야한다.
- 6) 현장활동중 시민을 대할때는 역지사지의 원칙과 책임공감의 원칙, 감정통제, 언어절제의 원칙을 마음속에 담고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아도 시민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대한다.

5. 동물보호, 포획 처리

가. 벌집제거

- 1) 반드시 4인 1조로 대응한다. 1인 주변통제 3인 벌집제거 작업
- 2) 현장도착전 상황실 및 신고자와 연락을 통해 정확한 현장위치와 상황정보를 파악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도록 안내한다
- 3) 작업시작전 보호복,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한후 사전 제거한다. 복장을 갖추때는 벌들의 특성을 파악, 보호복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밀봉을 한 채 작업에 임한다.
 - * 주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유도, 작업시 안전에 유의
 - * 야간 벌집제거시 벌의 움직임 판단하여 제거 결정
- 4) 벌집위치 까지는 사다리 등 직접 몸이 닿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말벌 퇴치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다만 직접 손이 닿지 않거나 사다리로 접근할 수 없을 때는 원격 말벌 퇴치기 등을 이용한다.
- 5) 보조자 1명은 작업전 주변에 사람들이 가깝게 오지 못하도록 파이어라인이나, 기타 안내문을 붙이고 길목을 지키며 인근 사람들이 멀리 대피하도록 조치하면서 주변의 창문도 모두 닫도록 조치한후

제거를 시작한다.

6) 말벌 등을 퇴치할때 불꽃이 있는 스프레이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샌드위치 판넬이나, 목조주택 등은 절대로 불꽃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벌 종류 퇴치시 불꽃, 파리약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죽이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고 집벌이나 꿀벌 등은 벌 관련 전문가에게 인계한다는 원칙을 가진다,

※ 현장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불가피할 경우 직접 죽이는 일은 가능하나 일부 자연보호주의자들로부터 문제제기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

8) 부작용 발생 가능성

① 벌집제거시 주변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벌에 쏘일 수 있다

② 불꽃을 사용할 경우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시설물에 불꽃이 착화하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벌집 제거시 불안정한 자세로 임할 때 벌에 쏘임 등으로 추락하거나 낙하할 우려가 있다.

④ 벌집을 과도하게 제거하다 벌집이 부착된 시설물의 파손을 가져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실제 사례가 많음)

⑤ 특히 기와속이나 건물내부에 지어진 벌집제거시에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파손해야할 경우 벌집 존재유무를 떠나 파손해도 좋으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허락서(서명)를 받은후에 실시한다.

⑥ 이때 반드시 직접 시설물의 주인인지를 확인한다.

※ 현장상황을 판단하여 위급성, 급박성이 없으면 시설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거 조치토록 안내한다

나. 야생동물 등 포획

1) 멧돼지 등 사람에게 공격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은 경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작전을 전개한다.

2) 필요시 소방차 방송시설이나 유관기관 방송시설을 활용, 사람들이

멀리 대피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경찰 등으로부터 현장통제선을 설치 하도록 요구하고 통제선 밖으로 야생동물이 가지 않도록 탐색인력을 배치한다

- 3) 멧돼지 등 대형동물은 반드시 4인 1조 이상 대응하고 필요시 인근 생활안전대 등 지원 요청후 합동작전을 실시한다
- 4) 필요시 엽사, 또는 경찰로 하여금 사살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주변인들 보호에 최우선 업무를 둔다
- 5) 기타, 뱀, 너구리 등 소형야생동물을 포획 할때는 물릴 경우 감염될 수 있으니 보호장구를 완전히 갖춘후 포획 시도한다
- 6) 야생동물 포획출동시는 반드시 구급대원 1개대 이상을 동시에 출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 7) 작업중 야생동물에게 물린 사람이 발견될 때는 최우선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후 병원이송토록 조치한다.
- 8) 유기견, 멧돼지 등 난폭한 동물은 마취총을 활용 기절시킨 후 안전하게 포획하고 이때 마취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대원에게 전파하고 총구방향측을 설정 대원과 외부인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사용한다.
- 9) 동물포획후 인근에 다른 무리동물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통제선을 해제한다
- 10) 마취총을 사용할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취약 사용량 등을 기록 관리에 철저한다.

다. 동물처리시 일반적인 사항

- 1) 동물구조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업무이나 동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보호는 119의 업무이며,
- 2) 보호동물은 자치구나 119를 떠나 모든 국민이 보호해야하는 의무이다
- 3) 동물의 종류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의 담당부서

야생동물	[市, 자연생태과 區, 공원녹지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반려동물 (유가·유실동물)	[市, 동물보호과 區, 지역경제 등]	• 동물보호법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	[市, 동물보호과 區, 축산업무부서]	• 축산법 (농림축산 식품부)
유해동물	[市, 환경과 區, 환경부서]	•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4) 동물처리 접수시 출동지령 기본원칙

- ① 사람의 통제권을 벗어난 동물들이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맹수·맹독·유해동물들이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장애요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혐오동물 출현으로 주변인들이 심한 거부감이나 제거를 요청할 때
- ④ 동물이 울무, 좁은 틈새 끼임 등의 이유로 방치하였을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해소

5) 동물처리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거절할 수 있는 대상

- ① 동물사체는 "동물사체회수 기동반"(128, 120번)으로 전화하도록 안내하고 종합방재센터에서도 직접 안내해준다, 이후 신고자에게 동물사체처리반에 연락하였음을 통보하고 1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다시 119나 120 또는 128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120 또는 128에 통보시각, 전화수보자를 확인하고 조치 완료후 119 종합상황실로 통보해 주도록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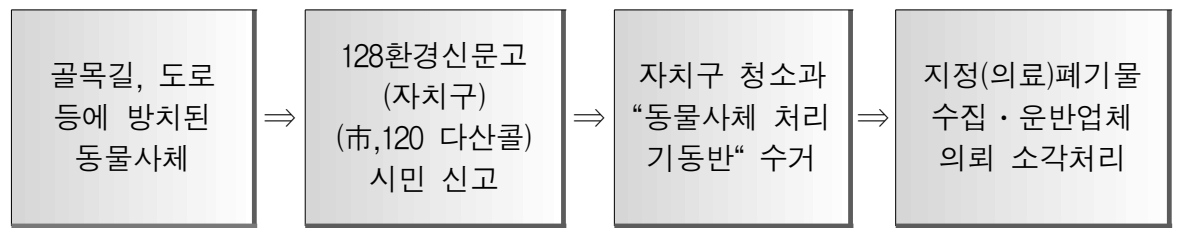
※ 다만 대형동물(멧돼지 등) 사체가 도로에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의 내용이 접수된 경우 출동할 수 있으며 이때도 도로가로 이동 조치한 후 120이나 128등에서 처리하도록 요청

- ②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는 동물사체 처리 신고접수시 처리완료시점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여 1시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119 생활안전대가 출동하여 조치한 경우에는 일시, 120 또는 128 처리 통보자, 통보내용, 처리결과 등을 적시하여 구조대책팀으로 즉시 통보한다,

※ 2009. 9. 7. 맑은환경본부 클린도시담당관실에서(현. 생활환경과) 『도로에 버려진 애완동물 사체, 신고만 하세요』로 보도자료 배부함. 동물사체처리 수거기동반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시민정서를 고려한 위생적 처리 시스템 마련한다는 내용임.

- 동물사체 처리 체계도



③ 서울시 길고양이 보호정책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작업후 방사하고 있음, 따라서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새끼 길고양이 등은 원칙적으로 출동을 자제하고 신고자에게 서울시의 고양이 정책을 설명해 준다. 소음등으로 불편을 해소할 경우 구청 당직실로 안내해준다.

다만 반려동물, 유기동물(애완동물)로 추정될때는 현장 출동하여 포획후 자치구에 인계한다.

※ 동물보호정책과 관련 구청에서는 방사하고 소방서에서는 포획하는 상호모순 업무는 지양해야함, 즉 서울시에서 매년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는 길고양이 관련 119 수보시 자치구 상황실이나 관련부서에 통보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수보자 성함, 통보시간, 처리결과 등을 확인후 매월 구조대책팀으로 통보(각 구청별로 현황 집계하여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통보예정임)

④ 비둘기, 까치 등 유해동물이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가 자율조치하거나, 동물구조협회 연락하도록 안내 또는 직접 통보조치 한다, 다만 동물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울무, 좁은틈에 머리끼임 등의 상태는 현장출동하여 조치한다

④ 동물구조후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센터에 인수인계시 반드시 서명을 받고 인계한다, 자치구의 보호센터 등이 운영하지

않을 경우 『토·공휴일이나 야간에 포획시』 안전센터내 자체 보관후 익일 일찍 관련부서로 인계조치 한다, 안전센터내 자체보관함 등이 없을 경우 자치구로부터 동물보관함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014년 부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체제로 각 자치구마다 운영계획임.

- ⑤ 각 자치구의 접수거부시 송·수화 담당자, 대화내용, 거부사유 등을 명기하여 즉시 구조대책팀으로 사례제출 한다

6. 생활밀착형 안전처리

가. 낙하위험물 등 시설물 위험요인 제거

- 1) 현장에 도착즉시 현장상황 판단후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한다
- 2) 복식사다리, 절연봉, 안전벨트 등 모든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고 화재·구조현장에서의 장비사용법을 준수하면서 작업에 임한다.
- 3) 전기, 통신, 가스배관 등 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과 직접 접촉하고 있거나 연관된 경우에는 관련기관 출동 요청후 협력해서 작업에 임한다.
- 4) 작업위치가 3층 이상일 경우에는 굴절,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출동 요청하여 적절히 활용한다.
- 5) 작업을 시작하기전 낙하물의 비산반경이나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관계자에게 설명후 위험구역을 설정, 파이어라인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통제한 후 작업에 임한다
- 6) 2차 피해가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구역 설정 등 출입을 통제하고 관계자에게 시설물 제거 전문인력 등에게 요청하도록 권유한다, 자칫 2차 피해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에 개입될 수 있으므로 관계자와 경찰 입회하에 충분히 토의후 허락하에 임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자의 동의를 서명으로 구해야 한다.
- 7) 조치완료후 추가피해 발생여부를 면밀히 점검후 관계자에게 현재 응급조치 상황이나 전문인에게 전반적인 검토와 안전위해요인 제

거하도록 교육후 귀서한다

- 8) 고드름 등을 파손후 낙하시켜야 하는 대상은 비산반경, 작업중 작업자의 통제범위 이탈 등으로 제2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바, 반드시 상황판단회의, 구조장비 착용, 사고현장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 후에 작업에 임한다.

※ 경계구역 설정 범위 : 고드름 높이 m x 1.5m

나. 급·배수지원

- 1) 침수지역의 배수작업은 익수, 감전, 알레르기반응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건물내 전기인입선 차단 또는 잔류전류 측정후 작업에 임한다.
- 2) 수중펌프 운반시 무게에 의해 몸에 무리가 갈수 있으므로 충분한 스트레칭후 운반기계 등을 활용 운반한다, 이때 전도되거나, 추락 요인이 없는지 안전관리자를 지정, 현장확인후 이동한다.
- 3) 배수구는 주된 하수구 등 충분히 물이 빠질 수 있는 장소로 배수하되 호스주변에 안전조치를 취하여 행인들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4) 펌프는 작업환경에 따라 크기와 용량이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작업에 임하고 필요시 펌프 사용법을 인지 시킨후 관계자에게 펌프를 대여하여 관계자가 직접 작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5) 펌프설치시에는 양정을 고려 적절한 지점을 선택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호스의 파손 등에 대비하여 호스주변의 쓰레기 등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6) 수중펌프는 전기배선의 원활한 설치로 전선파손에 따른 감전 등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하고 엔진펌프일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금지해야한다.
- 7) 침수지역은 위험·유독·오염물질 유출, 미끄러운 곳, 침하 지반, 붕괴위험 구조물, 익수 위험지점, 전기활선 및 전력시설 등을 파악하

여 표시 및 주지(周知)시키고 위험제거를 병행한다

다. 시건개방

- 1) 사람이 집안이나 차량에 갇혀 부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위급하다고 판단될때 갇혀있는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출동함이 원칙이다
※ 단순 문개방 등은 출동을 지양하고 열쇠전문가 등에게 요청하도록 안내함이 원칙임, 다만 심야시간대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할 경우 출동하여 조치할 수 있음,
- 2) 시건개방시 출입문을 파손시키지 않고 개방함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파손 개방할 수 있다.
- 3) 파손할 때에는 잠금장치만 파손되도록 주의하고 방화문이나 문틀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불가피한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되 파손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후 파손한다, 해제후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함.
피해에 대해 관계자의 동의를 확실하지 않을 경우 열쇠 수리공을 통해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신속구조를 위해 파손시는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의거 손실보상 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
- 4) 시건개방은 절도범이나 강도등과 직결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되 신분증과 이웃주민 등을 통해 2중으로 확인한 후 개방한다. 또한 자·타살이나 범죄와의 연루성 등이 있으므로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과 함께 개방한다.
- 5) 단순 열쇠분실이나 가정불화 등 긴급 또는 응급상황이 아니거나 갇혀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시건개방 출동지령은 지양한다
- 6) 시건개방에는 가급적 경찰과 함께 출동함이 원칙이고 특히 집주인 등이 외부에 출타후 집도착시 출입문의 훼손, 잠금장치의 이상 등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찰을 입회하여 개방해야한다, (강도 등이 침입해서 집안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있음)

【 현장활동사항 기재시 주의 사항】

- 단순 문 개방의 경우 자살, 타살 등 사건 최초 증빙자료로 활용 사례
 - 자살, 타살 등의 형사·민사 소송쟁의(訴訟 爭議)의 검증 자료
 - 사고현장의 최초 목격자 진술을 위한 민사(보험)에 대한 증명자료 요구
 - 부부싸움, 불륜행각 등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적 증빙자료 요구
 - 재산상속 등 민사 관련 최초 현장 확인 '구조활동증명' 자료 요구

라. 단순신체 끼임 사고

- 1) 현장도착 전 상황실 및 신고자와 연락을 통해 정확한 현장위치 및 현재 상황정보를 파악한다. 끼임(고립) 신체부위, 물체의 특성 및 크기 등을 파악하여 대원에게 상황전파 한다.
- 2) 예상치 못한 현장상황으로 인해 요구조자 및 보호자가 흥분하지 않도록 주의를 안심시킨다. 구조작업에 방해가 되는 주위 환경요소를 모두 제거한 후 대원의 안전이 확보 된 상황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 3) 구조작업 중 충격 등으로 인한 요구조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단이나 제거를 실시 하며 물체가 튕겨나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구조작업중 2차 부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당사자(성인일 경우)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전문 구조대의 지원요청을 한후 작업에 임한다, 또한 2차 피해로 부상의 정도가 심각할 우려가 있을때는 의사 등에게 지원요청 할 수 있다.
- 4) 구조물 제거 후 환자상태 판단하여 병원이송이 필요할 경우 구급대에 인계, 이송토록 조치한다.
- 5) 요구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 기계, 장치 등을 파손해야할 경우 사전 관계자에게 파손범위와 파손으로 인한 피해 등을 주지시키고 동의를 구한후 구조한다, 다만 긴급구조 상황일 경우 우선 조치후 설명한다,

- 6) 구조 과정에서의 시설물 파손 등은 요구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물의 결함 등은 시설주에게 책임이 있다.
- 7) 끼임 등의 사고가 119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당사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정과 안심을 시키면서 구조작업에 임한다.

마. 소방시설 오작동

- 1) 현장도착 전 상황실 및 신고자와 연락을 통해 정확한 현장 위치와 현재 상황정보(소방시설의 종류, 오작동 현상 등)를 파악한다.
- 2) 건물 내 각종 위험요인에 주의하며 특히 야간 출동 시 충분한 조명 장비를 휴대하여 시야확보 및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 경보신호가 감지된 위치를 찾아 화재유무 확인, 경보신호가 재발신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야간에는 도둑이나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경보발생을 염두해 둔다
- 3) 오작동 원인을 파악 후 안전조치 및 관계자에게 상황 설명하고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소방시설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보수토록 독려한다.
- 4) 특히 오작동에 의한 것인지 실제 상황을 감지한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자에게 인계한다.
- 5) 평상시 소방시설 작동법 및 오작동에 대한 응급조치법 등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춘다
- 6) 관계인이 없을 경우 경찰입회하에 조치하며 소방대상물 관리시스템에서 관계자 연락처를 파악후 즉시 연락을 취한다.

7. 위치정보 요청 업무처리

가. 119 수보단계에서의 업무처리

- 1) 위치정보요청과 관련 추적업무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위배될 수 있

는 요건이 많으므로 수보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적법절차에 따른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 또는 사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법 29조는 법 목적의 예외조항임.

2) 요청자의 적격요건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척, 미성년자 법적후견인에 한정되며 관계를 확인하기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방법을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3) 이때 다음과 같이 반드시 고지를 한다.

지금통화하신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이 거짓일 경우 관련법에 의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과 형사고발조치 되며 이를 확인하기위해 사법조사를 통하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위내용에 대해 사실조사가 시작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29조와 제43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의 거짓신고에 의해 60만원의 과태료 처분, 소방기본법 제 19조제1항 및 제56조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

4) 위치정보 요청 적격요건이 확인되면 “급박한 위험 판단”을 실시한다, 급박한 위험의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상 “재난”에 국한되며 소방방재청 지침에 “자살예정자”를 포함하여 사태가 조금도 여유가 없이 매우 급하게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 폭력, 가출, 실종, 연락두절은 현행법상 소방이 위치추적 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즉시 112로 상황을 인계하고 관계자에게도 경찰의 업무임을 고지한후 가까운 치안센터를 방문하여 실종 신고를 하도록 안내한다

5) 급박한 위험 판단이 결정되면 “긴급구조여부의 상황판단”을 하여야 한다. 즉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생명신체가 위급한 상황을 말한다.

6) 위 3단계(자격요건, 급박한 위험, 긴급구조여부)요건이 확인되면 위치 정보 추적을 요청하여 출동지령을 내리고 위치추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다음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계자에게 고지한다.

선생님이 요청하신 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소방대 및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최중기지국 반경 500m에서 1Km이 내를 수색하게 될 것이며 수색중 타인의 건물이나 사유지에는 일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중 선생님이나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출동소방대 및 경찰이 요청자·대상자의 사진, 전화통화기록 등 추가로 요청할 경우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 및 경찰이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한 것입니다

※ 또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후일 사법조사가 선생님과 주변관계인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

❖ 법정관계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수 있는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5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7) 출동지령후 출동한 소방대에게 신고자와의 통화내용, 고지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주고 인근 경찰의 출동요청을 한다.

❖ 참고사항

-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인권과 직결됨)로 인해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즉 사실혼이나 친구가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는 급박한 위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한다는 법취지로 받아들여야함.
- 만일 적격요건자가 아님에도 앞뒤 정황을 판단해본바 급박한 위험에 긴급구조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출동을 하였을 때는 반드시 추적조사해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한후 거짓일 경우 관련법(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에 의해 처벌하여야함.
※ 거짓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과장해서 말함

8)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허위, 장난, 거짓 신고자라고 확신이 있을경우 본부 감사반의 협력을 얻어 직접 처벌하고 결과를 본부 구조대책팀으로 통보함,

나. 출동대

- 1) 출동지령을 받은즉시 수보자의 계급과 성함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수보자와 신고자의 대화내용을 모두 기록, 파악한다.
- 2) 현장도착시 추적자가 위치하고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는 건물 관계자 등에게 설명한후 양해를 구하고 수색을 실시하며 수색을 할 때 관할

경찰서가 도착하면 경찰관의 신분을 파악후 함께 추적하도록 한다.

이때 사유지 등을 방문할때 반드시 관계인과 함께 움직이며 직접 관련된 것 외의 물건 등을 함부로 만지지 않고 관계인이 허락한 장소에만 출입한다.

- 3) 경찰은 가항 위의 3가지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사거주지 및 타인의 건물에 들어가서 추적을 하지 않으므로(경찰관련법규에 의함) 현장에서 경찰이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다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 4) 또한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경우 소방보다도 법적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방을 통해서 위치추적을 요청한 경우가 많으며 폭력, 실종, 가출, 연락두절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인계를 하고 소방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에도 경찰은 치안센터에 신고 접수된 경우에만 실종, 납치 등으로 분류하여 업무에 임함.
- 5) 현장확인한바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다른 부분이 밝혀지고 허위 또는 거짓으로 의심이 될 때에는 관할소방서 구조구급팀장 또는 사법조사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 6) 출동대로부터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구조구급팀장 및 사법조사는 즉시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녹취록 등을 요구하여 사실조사에 들어가며 필요에 따라 신고자를 방문 또는 소환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해야하며, 경범죄 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고발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7) 출동대는 사법조사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 메일로 본부 구조대책팀에 위 사실을 발송 한다. 본부 구조대책팀에서는 생활안전대가 사법조사 또는 구조구급팀장에게 의뢰한 사실조사여부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추적 모니터링 하며 결과를 요청한다.
- 8) 각 소방서 구조구급팀장 또는 종합방재센터는 위치정보이용 악용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취합하여 매월 본부 구조대책팀에 제출한다.

※ 안전센터 직원들의 불필요한 출동억제력과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별지 1. 구조활동일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서 구조대·안전센터

전화)

구조활동일지

						결재	부대장 (부센터장)	대 장 (센터장)	
일련번호	-								
신고 일시	20 :	신고자	성 명 연락처	신고 방법	[]일반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기타	접수자			
출동 시각	:	현장 도착	시각 :	거리 km	걸린 시간 (분)	관할 지역	[]관할 []관할 외		
완료 시각	:	구조에 걸린 시간	(분)	귀소시각			:		
사고 장소	주소						관계자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작업장·공사장 []도로 []상가·시장 []숙박시설 []빌딩·사무실 []학교·유치원 []논밭·축사 []종교시설 []지하맨홀 []하천·바다 []산 []공원 []목욕탕·사우나 []기타()								
사고 원인	[]화재 []교통 []수난 []약물 []위험물 []폭발 []붕괴 []기계 []승강기 []산악 []자연재난 []추락 []고립 []실내감염 []안전조치 []동물구조 []잠금장치 개방 []유독물질 []자해범죄 []위치확인 []벌집제거 []기타()								
범죄 의심	[]경찰통보 []경찰인계 []현장조사상황표 및 질문표 제공 []기타()								
긴급 분류	[]긴급 []준긴급 []잠재긴급 []대상 외 ※ 분류기준: 긴급(신속한 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태·상황으로 악화됨), 준긴급(긴급에 비해 시간제약이 적은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긴급상황으로 전개됨), 잠재긴급(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긴급·준긴급으로 전개됨), 대상 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구조요청의 거절 사유에 해당함)								
활동 개요									
조치 사항					특이사항				
요구 조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성별	직업	구조상태	주소	연락처(☎)		
동원 인력	[]소방: 명		[]기타: 명()		소방인원:				
동원 장비	[]차량: 대		[]장비: 외 점()						
구조 인원	■ 계: 명		[]사망: 명		[]부상: 명		[]기타: 명		
구조 실적	처리 내용	[]인명구조		[]안전조치		[]인명검색		[]기타 활동	
	미처리 내용	[]자체처리		[]오인신고		[]거짓신고		[]타 기관 처리 []구조거절 []상습악의	
장애 요인	[]관계자(기관) 협조 미흡			[]차량노후		[]장비고장		[]장비부족 []인력부족 []기타()	
구조 효과	구조활동이 없었다면? []사망 가능 []심각한 상태·상황 악화 []약간의 상태·상황 악화 []유사 결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2. 생활안전구조활동증명서 발급신청서】

(붙임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전구조활동증명서 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용 도	수혜자와의 관계 [] 본인 [] 보호자 [] 공공단체 [] 보험회사 [] 기타			
수혜자 · 시설물 관계자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소방방재청 훈령 제 271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전구조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관서장 귀하

신청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1. 동물 보호, 동물 퇴치 등 관계인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발급되지 않을 수도 없음 2. 문개방, 급배수 지원 등 생활안전구조활동 당시 구조대원이 관계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급될수 없음 2. 본 증명서는 소방활동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시설물의 소유, 가족관계 등 소방활동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	수수료 없 음
신청인을 통한 확인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신원확인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자에 대한 생활안전구조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요구조자 또는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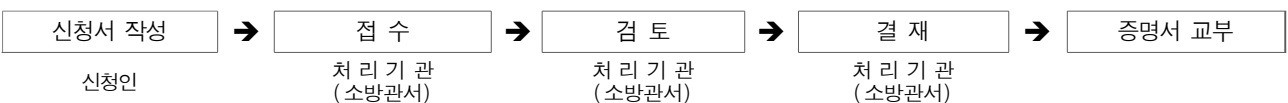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소방관서(중앙119구조단,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3. 생활안전 구조활동 증명서】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생활안전 구조활동 증명서

1. 수혜자 또는 시설물관계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2. 신고접수일시: 년 월 일(:)

3. 사고발생/활동장소:

4. 사고/활동내용 :

5. 생활안전구조대명:

6. 조치완료 시간 :

위 사실을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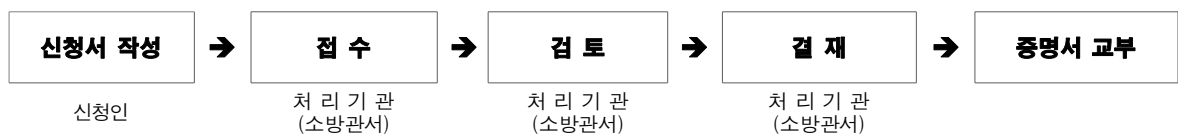
년 월 일

○○소방관서장

직인

❖ 구조활동증명서 발급

- 1) 법적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동법 제19조 (구조구급증명서)
- 2) 발급기간 : 즉시
- 3) 접수 및 발급기관 : 소방서(민원실), 구조대, 안전센터
- 4) 신청대상
 -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 (이하 "구조·구급자"라 한다)
 - 구조·구급자의 보호자
 -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 받은 자
- 5) 신청인 확인서류 및 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신원확인
 -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조·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구조·구급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요구조자 또는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6) 발급방법
 - 증명원 접수 및 검토의뢰 보고 : 先 검토 / 後 전자결재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연계 증명원 출력
 - 발급대장 기재 後 즉시발급 (신청자 인터넷 또는 우편 발급)
- 7) 수수료 : 없음
- 8) 업무처리 흐름



【별지 4. 구조거절 확인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서 구조대·안전센터		구조 거절 확인서		결재	부대장 (부센터장)	대 장 (센터장)
구조일지 일련번호	-					
구조대상자 평가	세부 거절 항목		<input type="checkbox"/>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 상황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단순 문 개방 <input type="checkbox"/>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input type="checkbox"/> 장애물 단순 제거 <input type="checkbox"/>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input type="checkbox"/>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 <input type="checkbox"/> 구조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요구조자 고지	고지 항목		<input type="checkbox"/> 상태·상황이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input type="checkbox"/> 구조 거절의 이유, 구조대원의 소속·성명·전화번호 및 이의제기방법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치 수단 및 방법			
	다른 조치 수단 및 방법 고지 내용					
녹음 등 유무	<input type="checkbox"/> 녹음/녹화 자료 있음		<input type="checkbox"/> 녹음/녹화 자료 없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자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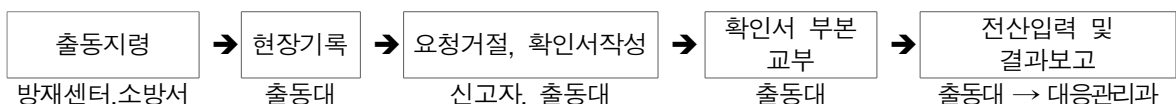
본인은 구조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교육·자격 및 경험 등에 의하여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성실히 평가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구조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조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20 : 구조대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구조요청거절

- 1) 법적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구조구급요청의 거절)
- 2) 거절요건 : 119 신고자에 의한 구조요청 거절에 한함.
- 3) 구조활동기록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조치결과 ‘허위’ 입력
 - 신고자 :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신고사유 /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관계내용
 - 현장상황 : 현장도착 후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구조거절확인서 작성 및 교부 / 조치결과, 인계사항 등 상세히 기록
- 4) 전산입력 : 입력(복귀 후 교대근무 前 까지 → 구조활동 일일 24:00 마감)
 - 시스템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 항목 : 재난 및 안전사고 주요 13개유형 119개 세부유형별 입력
- 5) 기록관리 : 소방관서 3년간 보관 → 전산입력 및 전자문서 자동보관



[별지 5. 자인서 및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주 소 : (전화)

업소명 : (전화)

성 명 : (나이) 만 세

생년월일 :

[위반내용]

자인확인서는 받지 않아도 과태료 부가할 수 있으나, 출동대가 신고자의 허위신고 사실증명을 위해 작성

년 월 일

위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소방서장 귀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연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 물 구분)	
위법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증빙자료				
비 고	※ 소방시설관련업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시 준용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계급 / 성명 (인)

【별지 6. 서울시 동물보호 및 TNR사업 위탁현황】

서울시 동물보호 · TNR사업 위탁현황

연번	구분 구별	위탁 업체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비고
		유기동물 보호사업		길고양이 TNR사업		부서명	연락처	
계		· 동 구 협 : 19개구 · 동물병원 : 6개구		· 동 구 협 : 12개구 · 동물병원 : 13개구				
1	종로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산업환경과	2148-2426	
2	중 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미래지동물병원	02)2233-7574	지역경제과	3396-5073	
3	용산구	수의사회 용산구분회	02)778-7582	수의사회 용산구분회	02)778-7582	지역경제과	2199-6812	
4	성동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지역경제과	2286-6149	
5	광진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일자리경제과	450-7324	
6	동대문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전농종합동물병원	02)2215-7582	경제진흥과	2127-4272	
7	중랑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지역경제과	2094-1288	
8	성북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일자리경제과	920-3365	
9	강북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지역경제과	901-6452	
10	도봉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일자리경제과	2289-1577	
11	노원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25시 동물병원	02)935-0079	일자리경제과	2116-3482	
12	은평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러브 마이펫	02)382-7582	생활경제과	351-6842	
13	서대문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경제발전기획단	330-1923	
14	마포구	수의사회 마포구분회	02)3141-8274	수의사회 마포구분회	02)3141-8274	지역경제과	3153-8563	
15	양천구	우신동물병원	02)2693-8883	우신동물병원	02)2693-8883	지역경제과	2620-3245	
16	강서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지역경제과	2600-6284	
17	구로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샘동물병원	02)2681-7585	지역보건과	860-2428	
18	금천구	강현림동물병원	02)2642-8886	강현림동물병원	02)2642-8886	지역경제과	2627-1314	
19	영등포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지역경제과	2670-3418	
20	동작구	디아크동물병원	02)816-7582	디아크동물병원	02)816-7582	일자리경제과	820-1368	
21	관악구	서울동물병원	02)888-8807	서울동물병원	02)888-8807	지역경제과	880-3379	
		러브펫종합동물병원	02)837-8875	러브펫종합동물병원	02)837-8875			
22	서초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기업환경과	2155-6449	
23	강남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강남25시동물병원	02)545-8575	경제진흥과	3423-5514	
24	송파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경제진흥과	2147-2517	
25	강동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박형우동물병원	02)484-4063	일자리경제과	3425-5848	

[별지 7. 서울시 야생동물 구조 치료기관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 지정현황

[담당부서: 서울시청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2133-2151]

자 치 구 - 공원녹지과



서울특별시 지정현황

구분	시·군·구	치료소명	주 소	전화번호 지역번호(02)
1차	종로구	독립문동물병원	종로구 교복동 10-30	733-5060
	중구	활동물병원	중구 목정동 32-1	2278-0075
	용산구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용산구 한강로2가 115-2	749-4747
	성동구	공호가족병원	성동구 공호1가 506-1	2291-5391
	강진구	어린이대공원 동물관리소	강진구 능동 16	450-9366
	동대문구	뉴월드동물병원	동대문구 답십리3동 465-98	2212-5233
	중랑구	태릉동물병원	중랑구 목1동 175-2	973-1953
	은평구	한명동물병원	은평구 용암3동 576-25	304-5553
	마포구	서교동물병원	마포구 양원동 415	332-7984
		동서조류연구소	마포구 상산2동 200-46	304-8822
	양천구	강동물병원	양천구 목3동 657-16	2642-9159
	구로구	개명동물병원	구로구 고척동 265-4	2615-5014
2차	서울 특별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관악구 신림동 산56-1	880-8671 880-8666
		서울대공원 동물병원	과천시 막계동 159-1	500-7770

▶ 치료기관 1차 : 12개소, 2차 : 2개소



【별지 8. 인수인계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 인수 · 인계서

[신고사항]

- 신고일시 : 2000.00.00(요일), 00:00
- 신고자 : 김** 주소 자치구명 전화번호 010-****-****
※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임.
- 신고내용 : 간략히
- 신고방법 : 119신고 서울종합방재센터

[구조활동]

- 일시 : 2000.00.00(요일), 00:00
- 장소 : 김** 주소 자치구명 전화번호 010-****-****
- 활동내용 : 간략히

[동물정보]

축종		보호동물사진 (5X6Cm)
품종		
털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년 월 일

인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인계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 ○ 소방서장

【별지 9. 유해야생동물종류】

【유해야생동물 종류 : 17종 포유류 6, 조류 11, 포유류 17종】

<p>국 명 맹수류 학 명 Mammalia sp.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맹수류(Fierce animals); 맹수류(Fierce animals) 비 고 유해야생동물</p>	<p>국 명 멧돼지 학 명 Sus scrofa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소목(Artiodactyla); 멧돼지과(Suidae) 비 고 먹는자처벌대상야생동물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고라니 학 명 Hydropotes inermi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소목(Artiodactyla); 사슴과(Cervidae) 비 고 한국고유종 먹는자처벌대상야생동물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두더지 학 명 Mogera robusta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식충목(Insectivora); 두더지과(Talp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청설모 학 명 Sciurus vulgari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쥐목(Rodentia); 다람쥐과(Sciur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쥐류 학 명 Rodentia sp.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쥐목(Rodentia); 쥐과(Muridae) 비 고 유해야생동물</p>

【조류 11종】

<p>국 명 오리류 학 명 Anatidae sp.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p>	<p>국 명 꿩 학 명 Phasianus colchicu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닭목(Galliformes); 꿩과(Phasian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p>	<p>국 명 멧비둘기 학 명 Streptopelia orientali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 강 (A v e s) ; 비 둘 기 목 (Columbiformes); 비둘기과 (Columb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조수류 학 명 Aves sp.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조류(Birds); 조류(Birds) 비 고 유해야생동물</p>	<p>국 명 갈까마귀 학 명 Corvus monedula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까마귀과(Corv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까마귀 학 명 Corvus corone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까마귀과(Corv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까치 학 명 <i>Pica pica</i>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까마귀과(Corv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떼까마귀 학 명 <i>Corvus frugilegus</i>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까마귀과(Corv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어치 학 명 <i>Garrulus glandarius</i>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까마귀과(Corv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직박구리 학 명 <i>Hypsipetes amaurotis</i>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직박구리과(Pycnonot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p>국 명 참새 학 명 <i>Passer montanus</i>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참새과(Ploce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p>	

【별지 10. 허위 또는 거짓신고 사실조사 의뢰】

허위 또는 거짓신고 의심 사실조사 의뢰서					
수 신	○○ 소방서 구조구급팀장 ○○ 소방서 위험물팀장(사법조사)				
출동대		출동대원	계급 :	성명 :	
			계급 :	성명 :	
			계급 :	성명 :	
출동시각	년, 월, 일, 00:00	도착시각	00:00	귀소시각 : 총 시간 분 소요	
출동종류		출동장소			
현장도착시 상황	개괄적으로 기록				
현장조치 내용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단되는 근거	개괄적으로 기록				
신고자 성함			신고자 연락처		
119신고 접수자 성함		신고 내용			
첨부 1. 자인서(없어도 무방함) 2. 기타 근거자료					
위와같이 119 허위,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하여 확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0월 00일. 00안전센터 000 (인) ※출동대 선임자가 서명					

※ 출동대는 본양식을 작성 이메일 또는 문서로 구조구급팀장, 사법조사에게 송부, 각 소방서 사법조사 담당자는 송부 받은 즉시 조사, 조치후 결과를 본부에 제출

【별지 11. 소방활동 동의서】

		소방활동 동의서		()안전센터 제 호
신고자	성명, (세) T.	건물주와 관계 :		
	신고내용 :			
성 명	(년생). 세 / T.			
주 소				
동의내용	<p>상기 본인은_____건물(장소) (소유주) (관리책임자) (기타 민법상 법률책임자)로서 _____(안전조치) (사고) (기타_____)와 관련 119 생활안전대가 업무처리를 위해 부득이 _____ 일부를 파손하도록 조치 요구하였으며 그로인해 _____가 파손되거나 훼손 되어도 119 생활안전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p> <p>※ 생활안전대장이 판단하는 부작용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p>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자 성명_____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소방서장 귀하</p>			
<p>위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함. 생활안전대장_____ (서명)</p> <p>현장 입회함 : () 안전센터 소방 , _____ (서명)</p> <p>현장 입회(외부인) : 주소 _____ T, 성명, _____ (서명)</p>				

※ 상황종료후 3년간 보관

※ (참고) 119생활안전구조대 필요장비 현황(예시)

품 목								
생활안전 구조활동	 <p>휴대용 유압 또는전동식 구조장비</p>			 <p>이동식 라이트</p>		 <p>체인톱 또는 전동톱</p>		
	 <p>승강기 마스터키</p>	 <p>만능 문개방기</p>	 <p>햄머</p>	 <p>파이프렌치</p>	 <p>1차 드라이버</p>	 <p>차량 문개방기</p>	 <p>반지절단기</p>	 <p>보관함</p>
동물 포획	 <p>동물포획망 (大, 中, 小)</p>			 <p>올무</p>		 <p>후크</p>		
	 <p>동물 이송함(大, 中)</p>		 <p>파충류집게</p>		 <p>포획용 집게</p>		 <p>에어블루건</p>	
별집 제거	 <p>전용 스프레이</p>	 <p>보호장갑</p>	 <p>보호복</p>	 <p>원격 말벌퇴치기</p>				